

정보공개제도하에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관한 소고

엄 남 이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대학원>

목 차

1. 들어가는말—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의 현황 및 문제제기
2. 정보공개 의의
3. 정보공개제도하에서의 공공도서관의 역할
 - 3.1 공공도서관에서의 행정자료의 수집과 제공활동
 - 3.1.1 지방행정자료의 수집—제도적 측면
 - 3.1.2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서의 지방행정자료 수집·제공현황
 - 3.2 정보공개 의 장으로서의 공공도서관
 - 3.2.1 제도적 측면
 - 3.2.2 정부기록보존소
 - 3.2.3 행정자료실
4. 정보공개제도 실시에 따른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제언—결론을 대신하여

1. 들어가는 말—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의 현황 및 문제제기

자본주의체제하에서 정보 또한 유력한 상품으로 전락되며, 이러한 정보는 '정보전략' 혹은 '정보전쟁'을 방불케 하는 국제경쟁의 양상속에서 자본, 권력과 함께 현대 국가의 정치, 경제체제의 유지를 위

해 필요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의 공업화 기반 구축과정과 1970년대의 산업국가에로의 도약과정을 거쳐오면서 행정권은 날로 비대해졌고, 정보를 핵으로 하는 현대 국제사회의 경쟁속에서 정보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산업기술의 발전과 사회조직의 능률화를 도모하려는 노력속에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이용하는 데 있어 중앙집권적 체제를 초래하였다. 또한 1980년대 들어 사회복지 등의 새로운 정부업무가 폭주함에 따라 정부는 국민 개인이나 산업 및 각종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막대한 양의 정보를 수집, 보유, 관리하는 거대한 정보 독점관리체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정책이나 지방정부의 행정에 관한 중요한 정보는 대부분의 경우 행정기관이 비장하고 있어, 국민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항상 입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정부는 1987년 4월 행정전산망 종합계획의 확정에 따라 1991년까지 36개 행정기관(공안·국방기관은 별도)의 전산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해왔고,¹⁾ 최근에는 2단계 사업으로 1996년까지 금융·행정·공안·국방·교육연구망 등 5대 국가기간전산망의 구축계획을 확정해 실행하고 있다.²⁾ 이런 정부의 전산화 추진계획은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 투기와 탈세를 막는 데 없어서는 안될

1) "국민생활 권력 앞에 완전 노출—사생활 침해 우려 현실화 '행정전산망'," 한겨레신문 1991년 2월 5일자.

2) "2단계 기간전산망 확정," 한겨레신문 1992년 2월 27일자.

중요한 기반임은 분명하나 행정혁신 이면에 정부의 정보독점에 따른 정보정치,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일례로 최근 선거운동에 필요한 지역주민의 신상정보를 얻기 위해 행정전산망이 악용되기도 했다. 결국 거대한 정보독점의 행정부가 존재하는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 유통되는 정보량이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그질은 편제화되고 국민과 정부간의 자유로운 정보유통은 어렵게 되어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커다란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국가가 소유한 행정정보의 공개문제가 대두된다. 정보공개는 정보화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요체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고 주권자인 국민의 국정활동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가능케 하므로써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뿐 아니라,³⁾ 행정부의 비밀주의를 견제함으로써 행정권한의 남용과 정보독점에 의해 야기되는 부패를 방지하고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⁴⁾ 또한 국민의 실생활 면에서도 국민은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보건, 위생확보를 위한 상품의 질과 내용 및 인구·주택문제, 토지계획문제, 조세문제 등 실생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⁵⁾

1989년 1월 정부는 정부 부처의 전산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정보공개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3년이 지난 현재 어떠한 진전도 보이지 않고 있다.⁶⁾ 다만 같은 해 행정정보의 청구공개와 관련된 한 건의 헌법소원 판결이 있었을 뿐이다.⁷⁾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30년만의 지방자치제의 부활과 함께 1991년 11월 청주시의회가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의결, 다음해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다.⁸⁾ 그러나 청주시 측에서는 정보공개법 등 근거가 되는 모법이 없는 상태에서 제정된 것은 무효라며 이 조례의 무효청구소송을 대법원에 냈고,⁹⁾ 1992년 6월 대법원에서는 청주시 측의 청구를 기각하므로써 비로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¹⁰⁾ 청주시에 이어 밀양시의회와 광역의회로는 처음으로 전북도의회에서도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¹¹⁾ 행정정보공개조례의 제정은 이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것이 예상된다.

강압적으로 연기되었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치루어 내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다면, 국정차원에서의 정보공개가 전무하다시피한 실정에서 지방단위에서나마 정보공개가 실시된다는 것은 큰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은 정보공개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요망되는 때라고 본다.

이 소고는 지역의 정보센터로서 지역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므로써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신장에 기여하는 기관인 공공도서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정보공개제도의 실시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정보공개의 전제로서 혹은 그와 병행해 가야할 문제로서 정보의 효율적 관리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그동안 공공도서관은 지방행정자료의 수집과 제공활동을 통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정보공개의 기능을 담당해왔다. 이 소고에서는 공공도서관에서의 이와 같은 활동이 정보공개와 어떠한 관련

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서울: 동 연구원, 1991), p.10~11.

4) 정보문화협의회, "정보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향," (정보문화협의회 정책자료 89~101, 1989), p. 16.

5) 이윤식, "한국에 있어서 정보공개제도화의 방향(1)," 행정과 전산 제13권 3호 (1991년 10월) : 9

6) "정보공개'입법 1년 넘게 표류," 한겨레신문 1990년 6월 30일자.

7) "이해당사자가 '공익보호 범위내' 요구할 땐 국가기관 소유정보 공개해야," 한겨레신문 1989년 9월 5일자.

8) "청주시 정보공개," 한겨레신문 1991년 11월 26일자.

9) "주민 '알 권리'싸고 시-의회 대립," 한겨레신문 1992년 1월 10일.

10) "행정정보 공개해야-대법원 판결, 지역주민 알 권리 보장 마땅," 한겨레신문 1992년 6월 24일자.

11) "정보공개조례안 제정-전북도의회," 한겨레신문 1992년 7월 4일자.

이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고, 공공도서관에서의 지방 행정자료의 수집과 제공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제도적 측면과 그 실태에 관해 알아본다.

2. 정보공개 의미

정보공개란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외부인에게 개시(開示)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¹²⁾ 이러한 광의의 정보공개 개념은 그것의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여러 유사한 이름으로 불리워지며, 이를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정보공개를 국가기관에 의무화 시켰는가에 따라 '정보제공시책'과 '협의의 정보공개제도'로 구분된다. 여기서 정보제공시책이란 재량적인 정보개시로서 주로 가공된 정보인 홍보정보를 공개청구의 유무에 관계없이 국가기관이 임의로 판단하여 의도한 대상자들이나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반면 협의의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에 의한 의무적인 정보개시로서 개시청구를 전제로 하지 않은 정보개시인 '정보공표제도'와 일반인의 개시청구를 전제로 한 '일반정보개시청구제도'로 구분된다.¹³⁾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보공개제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실정법상의 권리로서 구체화시켜, 정부에게 시민이 요구한 정보의 개시를 의무화 시키는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위에서의 일반정보개시청구제도를 지칭한다.

이와 같이 정보공개 개념 중 일반정보개시청구가 일반적으로 그 제도화와 관련해서 정보공개로 지칭되는 이유는 정보제공이나 정보공표는 시민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의사에 따라 행해지고, 소수의 이해관계자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이해당사자나 일반국민이 청구하는 정보에 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¹⁴⁾

하지만 정보공개를 일반적으로 말하는 개시청구만을 의미하지 않고, 정보제공과 정보공표까지 포함하는 넓은 체계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어느 한쪽만으로는 실질적인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시청구에 의한 정보공개는 시민들이 광범위한 분야에 대하여 정보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운영면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우선은 이제까지 비밀주의하에서 정보의 독점적 소유를 누리던 공무원에게 정보청구란 그 행정재량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거부반응이 예상된다. 둘째, 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은 어떠한 행정정보가 존재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정보공개의 인정만으로는 충분한 정보에의 접근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 주민이 요구하는 정보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있다고 해도 주민이 원하는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정보공개체제란 개시청구공개체제와 정보공표 그리고 정보제공체제 간의 균형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정보공표와 정보제공체제의 성공적 운영은 청구공개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감소시켜 이에 따른 청구공개에 소요되는 시민 및 정부의 부담을 완화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두 체제는 상호 보완적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와 같이 정보공개의 모범이 없는 상태에서 일찌감치 정보공개조례를 제정, 실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그 주요 지역의 정보공개조례에는 정보제공추진시책을 포함시켜 정보공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¹⁵⁾ 또한 실제 운영면에서도 공문서 개시청구의 이용건수와 정보제공의 이용건수를 비교해 보면 정보제공 쪽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⁶⁾

12) 이윤식, p. 7.

13) 阿部泰隆, "情報公開の體系とその総合的整備," ジュリスト 第854號 (1986年 2月) : 36.

14) 이윤식, p. 8.

15) 예를 들어 도쿄도(東京都)의 경우, '도쿄도 공문서 개시조례'안에 '정보공개의 종합적 추진에 대한 도의 책무,' '정보제공시책의 확충,' '정보공표제도의 확충' 등을 명시하고 있다. 總務廳行政管理局, 情報公開制度化への課題 (東京, 第一法規, 1990), p. 107.

16) 水口政次, "文書館における文書資料の取扱いについて," 日本圖書館協會, 情報公開制度と圖書館の自由, p. 172.

3. 정보공개제도하에서의 공공도서관의 역할

공공도서관은 그것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에게 친근한 존재로서 오래전 부터 지방행정자료의 수집과 제공활동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제공시책을 담당하는 기관이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공공도서관은 넓은 의미의 정보공개체계 중 행정자료실, 의회도서관,¹⁷⁾기록보존소 등과 함께 정보제공시책의 일익을 담당할 뿐 아니라 정보공개외의 장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고 보인다.

3.1 공공도서관에서의 행정자료의 수집과 제공활동

공공도서관은 시민에 대한 자료의 제공과 정보서비스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게 그 판단자료를 제공하여 독서 행위에 의해 사고력을 기르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 사회를 그 기초부터 떠 받치고 있는 기관이다.¹⁸⁾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이러한 정보서비스를 위한 중심적 자료가 지역자료이며 지역자료의 중심적 자료가 바로 지방행정자료를 중심으로 한 행정자료인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도서관에서 행정자료를 체계적이며 망라적으로 수집, 정리, 보존해서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공공도서관의 이념에 비쳐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복지국가화에 따르는 행정의 비대화, 특히 지방정부가 민주생활 전반에 걸친 사무를 집행하게 됨에 따라 시민에 관한 팽대한 정보를 축적하게 되고 정보의 독점화에 의한 폐단 등으로 해서 정보제공시책의 일환으로서 공공도서관의 행정자료 수집과 제공활동은 더욱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¹⁹⁾ 특히 공공도서관

에서의 지방행정정보 제공은 주민 대 지방행정이라는 대항관계를 지양하고 주민참가에 의한 민주적 자치제를 정착시켜 가기 위한 중요한 조건인 동시에 자치단체의 직원에게도 지방행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행정내부로 부터의 변혁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 될 수도 있다.²⁰⁾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행정기관 대부분이 정보센터가 미설치되어 있고 설치지역이라도 활동이 미비한 상태이다.²¹⁾ 따라서 주민에게 가까운 시설을 널리 활동할 대책이 요구되며 그 일환으로서 공공도서관을 이용함은 다른 일반간행물 및 다른 지방정부의 자료를 참고하며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공공도서관에 있어서의 충분한 행정자료의 수집, 제공활동은 보다 포괄적인 정보공개에 이르는 전 단계로서 역할하는 것이며 이것이 불충분할 경우 정보공개는 형해화(形骸化)할 위험성이 있다.²²⁾

지방행정자료란 지방자치단체의 간행물만을 지칭하기도 하고 넓게는 지방자치단체의 간행물은 물론 그 공공도서관이 소재하는 지역에 관해 생산된 행정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는데 도서관에서 수집, 이용될 수 있는 자료는 광의의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방행정자료를 지방공공단체의 성격, 사무의 범위 및 지방자치행정의 기본원칙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실제적으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즉 지방행정자료란 지방공공단체,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에서 간행한 자료, 중앙 정부간행물 중 해당지역의 행정에 관한 자료 및 시민의 지방행정에 관한 자료와 개인이나 단체가 작성한 그 지방의 행정에 관한 자료를 총칭한다.²³⁾

17)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는 중앙정부차원의 국회도서관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18) 石井敦, 前川恒雄, 『圖書館の發見』(東京:日本放送出版協會, 1973), p. 23.

19) 『情報公開と圖書館』檢討グループ, 『情報公開と圖書館』日本圖書館協會 編, 『情報公開制度と圖書館の自由』(東京:同 協會, 1987), p. 20.

20) 砂川雄一, 『行政に對する資料・情報サービス』, 『圖書館界』第34卷 1號(1982年 5月): 117.

2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 64.

22) 砂川雄一, p. 120. 『情報公開と圖書館』檢討グループ, p. 22.

23) 沓掛尹左吉, 『地方行政資料の正義と範圍』, 『圖書館雜誌』第60卷 1號(1966年 1月): 28~29.; 圖書館問題研究會 編, 『圖書館用語辭典』(東京:角川書店, 1982), p. 361.

오구시 나누미(大串夏身)는 행정자료의 종류로 일반시(一般市)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²⁴⁾

- (1) 시정집행방침, 시의 시책관계자료, 각 과·국·실의 중점사항, 시책관계자료
- (2) 시의 예산서, 동 설명자료, 결산서(시보유재산에 관한 것을 포함), 주요시책의 성과 설명서
- (3) 조례, 규칙, 통칙, 행정실례, 판례
- (4) 시의 기본계획, 단기계획, 각 과·국·실의 사업계획, 실적보고, 사무지침, 백서
- (5) 시의 행정제도, 행정조직, 직원명부
- (6) 사업실시 요강, 실시기준, 사업에 따른 동향분석과 진단, 실내조사에 관한 자료
- (7) 권고, 답신, 요망서, 청원서, 진정서
- (8) 시의회의 의안, 제출안건에 관한 설명자료, 의사록, 위원회 회의록, 선거결과 보고서
- (9) 통계자료(각 과·국·실의 사업관계 통계류를 포함)
- (10) 시공보
- (11) 시의 역사, 사업사, 재해사(災害史), 기념사업관계사
- (12) 요람(편람)
- (13) 연구보고서류(프로젝트팀의 보고서를 포함)
- (14) 자료·도서목록, 각종 홍보지
- (15) 기타

3.1.1 지방행정자료의 수집-제도적 측면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에서 지방행정자료를 수집·제공하는 데 있어 관련 제도를 살펴보면, 우선 1991년 제정된 도서관진흥법이 있고, 그 다음 지방

자치단체가 제정한 도서관설치조례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무관리규정을 들 수 있다. 이밖에 도 지방자치단체보 발행규칙이 있다. 이하에서는 도서관진흥법, 도서관설치조례, 사무관리규정 순으로 관련 규정을 살펴본다.

<도서관진흥법>²⁵⁾

제2조 제2항(정의) :

‘도서관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하는 도서, 기록, 소책자, 연속간행물, 악보, 지도, 사진, 그림 등 각종 인쇄자료, 영화 필름, 슬라이드, 음반, 비디오물, 마이크로 형태물, 테이프 등 시청각 자료, 전산화 자료, 공문서 등 행정자료, 향토자료 기타 도서관 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제20조 공공도서관의(업무) :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제3항 : 지방행정 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30조(자료제공) : 지방자치단체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관할 지역안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도서관진흥법은 도서관자료로서 공문서 등 행정자료와 향토자료를 명시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은 지방행정 및 산업분야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그 하나의 업무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단체의 간행물을 해당지역의 공공도서관에 제공해야 함을 의무화시키고 있다.

24) 大串夏身. 圖書館政策の現状と課題—國・自體の行政計劃を中心とした (東京: 青弓社, 1985), p. 168.

25)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25호로 공포되었다.

도서관진흥법 외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의 도서관설치조례를 제정해 도서관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포천 군립 도서관설치조례를 예로 삼아 관련 규정을 정리해본다.

<도서관설치조례>²⁶⁾

제3조(업무) :

1. 도서, 기록, 시청각 자료, 국가 및 지방행정자료, 향토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이하 “도서관자료”라 한다)의 수집, 관리와 보존
2. 도서관 자료의 열람 제공과 교환, 기타 학술연구자에 대한 자료 및 정보지원

제12조(도서관자료의 제공 및 납본) :

1. 포천군 관내 공공기관이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도서, 기타 간행물을 배분할 때에는 그 발행기관이 배부처를 미리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1부를 도서관에 우선 납본하여야 한다.
2. 포천군 관내 공공기관(학교를 포함한다)이 공보, 도서 기타 간행물을 발간할 때에는 그 1부를 도서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각 기관은 그가 제작한 시청각 자료 기타 향토 문화관련 자료 중에서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에 대하여 도서관에 그 관리를 전환할 수 있다.

이상의 도서관설치조례에서는 도서관자료에 국가 및 지방행정자료를 명시하고 있으며, 보다 중요한 사실은 공공도서관이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발행자료의 배분소일 뿐 아니라 자치단체내 공공기관이 간행한 자료의 납본처이고 또한 기록보존소

의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 동 조례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일반간행물의 납본처로서 기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기관이 발행하는 공문서와 간행물의 생산과 처리는 ‘사무관리규정’과 ‘정부공문서 규정 시행규칙’에 의해 이루어 지도록 되어 있다. 사무관리규정 중 공공도서관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무관리규정>²⁷⁾

제2조(적용범위) :

중앙행정기관(대통령직속기관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3조(정의) :

“공문서”라 함은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 및 슬라이드를 포함한다)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자료”라 함은 행정기관이 생산 또는 취득하는 각종 기록물(공문서를 제외한) 중 행정기관에서 상당기간에 걸쳐 이를 보존 또는 활용할 가치가 있는 도서·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 기타 각종 형태의 기록물을 말한다.

제78조(자료의 종류) :

자료는 다음과 같이 행정간행물·행정자료 및 일반자료로 구분한다.

1. 행정간행물은 행정기관이 발간하여 배포하는 행정업무에 관한 간행물을 말한다.

제82조(행정간행물의 납본 및 제공) :

26) 1988년 7월 19일 조례 제1093호로 제정됐다가, 1989년 11월 7일에 조례 제1179호로 개정됐다.

27) 1991년 6월 19일 대통령령 제13390호로 제정되었고, 이 규정의 제정으로 ‘정부공문서규정’은 폐지되었다.

3. 행정기관은...행정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발간일부터 1월 이내에 도서관진흥법에 의한 지역대표관에 그 간행물 2부를 제공하여야 하며, 행정간행물을 제공받은 지역대표관은 이를 일반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총무처장관은 행정간행물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대표관 외의 공공도서관을 행정간행물 제공대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상에서 공공도서관의 지방행정자료 수집·제공 활동과 관련되는 법제들을 살펴보았다. 도서관진흥법, 도서관설치조례, 사무관리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자료를 도서관에 의무적으로 납본 내지는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은 지방행정자료 중 공문서류보다는 간행물을 중심으로 수집, 제공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3. 1. 2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서의 지방행정자료 수집·제공현황

전국 127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향토자료 소장실태 및 향토자료실 개발여건에 관한 조사결과²⁸⁾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자료의 소장실태, 향토자료실 운영여건, 문서화된 수집정책의 유무, 지역내 출판물의 납본여부, 지역내 행정관청 및 각종단체·기관과의 협력관계 등에 관해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았다.

먼저 공공도서관의 지방행정자료 소장실태를 살펴보면 아래 <표 1>에서와 같이 지역의회 의사록을 소장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이 전체 127개관 중 17개관으로 불과 13%에 그치고, 자치단체의 법령집, 지방사법기관의 간행물, 지역행정기관의 보관문서와 간행물, 지역내 상공인 명부 등의 소장율이 각각 47%, 10%, 23%, 28%로 미비한 실정이다.

그리고 향토자료실 운영여건을 보면, 조사대상 127관 중 향토자료실이 설치된 곳은 대도시지역 26개관 중 10관, 중소도시지역 36개관 중 11관, 군지역 65개관 중 14관으로 전체 28%만이 향토자료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중 별도의 향토자료실

<표 1>

공공도서관의 지방행정자료 소장실태²⁹⁾

지방행정자료의 종류	행정구역별 공공도서관			계
	대도시지역 26개관	중소도시지역 36개관	군지역 65개관	
지역의회의사록	4 (15%)	2 (6%)	11 (17%)	17 (13%)
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등의 법령집	16 (62%)	25 (69%)	19 (29%)	60 (47%)
지방사법기관 재판기록 및 간행물	5 (19%)	6 (17%)	2 (3%)	13 (10%)
지역행정기관 보관문서 및 간행물	9 (35%)	16 (44%)	4(6%)	29 (23%)
지역내 상공인 명부	10 (38%)	15 (42%)	11 (17%)	36 (28%)

28) 정현태, “공공도서관의 향토자료개발에 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1). 이 논문에서 향토자료란 지역 사회 자료 혹은 지역자료와 동일개념으로 향토사 자료 뿐 아니라 실용적인 현재적 자료들, 특히 지방행정 자료나 지역산업조사 자료 등까지 포함하는 확대된 개념으로 정의된다.

29) 윗글, pp. 104~107.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곳은 불과 10관에 불과하다. 이외 13관은 여타의 참고집서와 같이 운영하고 있고, 13관은 서가상 별도의 집서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³⁰⁾

127개 공공도서관 중 문서화된 향토자료 수집정책이 수립돼 있는 곳은 28관으로 전체 22%에 불과했다. 또한 지역내 출판물을 납본 또는 기증받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80개관으로 전체 127개 도서관의 63%를 차지한다.³¹⁾

행정관청으로부터 문서이관을 받고 있는 도서관은 26관으로 전체 20%에 불과하고, 참고질의를 받아본 공공도서관은 47관으로 37%에 해당된다. 또한 지역의회로부터 질의를 받아본 도서관은 7관으로 5%에 불과하다. 행정관청의 지역내 각종단체나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살펴보면, 이들 단체에 자료수집 협조요청의 공문을 띄운 적이 있는 곳은 53개관(42%)이다. 또한 자료수집 협조요청을 위해 이들 단체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도서관은 전체 16%인 20개관에 불과했다.³²⁾

3.2 정보공개로서의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행정자료실, 기록보존소는 각각 그 설치목적과 기능을 달리하는 기관이다. 즉 정부기록보존소는 공문서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고 행정자료실은 시민에 대한 홍보, 공청회를 위한 자료의 열람, 대출,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데 비해 공공도서관은 시민을 위해 시민이 희망하는 자료를 수집, 대출하고 동시에 시민의 요구에 응해 정보조사를 행한다. 그러나 이용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 세기관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이며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공공도서관, 행정자료실, 기록보존소는 각각 그 공개창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정보공개의 제도화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면 제도화의 선행조건으로서 아니면 병행해야 할 문제로서 정보관리체제의 확립과 함께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정보공개를 행할 것인가 하는 실제적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 안으로 대별된다. 첫째, 현재 총무처 산하에 있는 정부기록보존소를 독립시켜, 국립정보공개관으로 확대하자는 안과, 둘째, 각 시·도의 행정자료실을 행정정보실로 확대해 정보공개의 종합적 창구로 이용하자는 안과, 셋째, 도서관을 정보공개의 장으로 이용하자는 안이 있다.³³⁾

정보공개제도는 이를 통해 행정의 책임체제의 개혁, 문서관리체제의 개혁과 비밀유지체제에 대한 중대한 개혁을 가져오는 것으로서³⁴⁾, 무엇보다도 그 주체는 마땅히 행정기관, 구체적으로는 행정자료실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행정체제가 갖고 있는 고질적 병폐인 비밀주의와 정보공개가 행정상의 편의에 따라 좌우되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성을 띤 교육기관인 공공도서관³⁵⁾을 정보공개의 창구로 삼는 것이 정보공개를 촉진하고 주민의 신뢰를 얻는 데 유효할 것이다.³⁶⁾ 또한 공공도서관은 지방행정자료와 함께 일반도서 그리고 그외 행정관계정보를 광범위하게 갖고 있고 이들을 본관, 분관, 배본소, 이동도서관, 서비스점 등 시민의 생활에 밀착된 서비스체계를 갖추고 시민에게 대출, 정보조사 및 제공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해온 기관이라는 점에서 정보공개의 장으로

30) 윗글, p. 75.

31) 윗글, p. 77.

32) 윗글, pp. 78~79.

33) 우리나라의 논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첫째 부류에 속하고 이밖에 소수의 행정학자가 두번째 안을 주장하고 있다. 세번째 공공도서관을 정보공개의 장으로 삼자는 안에 관해서는 몇몇 일본의 문헌정보학자가 논의하고 있다.

34) 주복원, "행정정보공개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9), pp. 17~20.

35)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법' 제9조에서는 공공도서관을 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36) 石塚榮二, "情報公開と圖書館," ジュリスト 臨時増刊 742號 (1981年 6月) : 88.

서 큰 이점이 있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 바탕하여 이절에서는 공공도서관, 정부기록보존소, 행정자료실의 관계에 관하여 그 제도적 측면과 실제현황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3.2.1 제도적 측면

공공도서관, 행정자료실, 기록보존소 세기관에서의 지방행정자료의 취급과 관련된 법제 중 앞서 공공도서관과 관련해 살펴본 것을 제외하고 '사무관리규정', '총무처와 그 소속기관직제', '지방자치단체보 발행규칙',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발간실 운영규정', '통계사무 운영규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목요연하게 이들을 관련 기관별로 정리하면 <표 2>과 같다.

우선 행정자료 취급에 관한 광범위한 규정인 '사무관리규정'에 관해 살펴본다.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사무의 간소화, 표준화 및 과학화를 기하고, 행정의 능률을 향상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이 규정 중 행정자료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지방행정자료 취급에 관한 법규

공공도서관	도서관진흥법 사무관리규정 도서관설치조례 지방자치단체보 발행규칙
행정자료실	사무관리규정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발간실 운영규정 지방자치단체보 발행규칙 통계사무 운영규정
정부기록보존소	총무처와 그 소속기관직제 사무관리규정

<표 3>

사무 관련 규정 중 행정자료 관련 내용

자료 범위	공문서	행정기관이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로 그 종류로는 법규·지시·공고·비치·일반문서가 있다.
	자료	공문서를 제외한 행정기관이 생산 또는 취득한 각종 기록물로서 행정간행물, 행정자료, 일반자료로 대별된다.
공문서보관	통계사무관장 : 문서과 보존기간 : 영구, 준영구, 10년, 5년, 3년, 1년으로 6종으로 대별된다. 보존기간 책정기준 : '정부공문서 분류번호 및 보존기간책정기준에 관한 규칙' 1년간 처리과보존 : 모든 문서가 해당된다. 3~10년 보존 문서 : 문서과에서 보존·폐기 준영구·영구 문서 : 문서과에서 5년간 보존 후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보존한다. 대통령의 결재문서 중 총무처장관이 정한 것은 기록보존소에서 보존한다.	
공문서이용	다른 행정기관이 문서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이년자가 열람 및 복사를 요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할 수 있고 다만 비밀 또는 대의비로 분류된 문서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공문서폐기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 즉시 폐기한다.	

자료관리 사무관장	총무처의 중앙자료기관 : 정부기록보존소 각행정기관 : 자료과, 자료책임자
자료 수집	자료관리기관이 연 1회 이상 자료의 수요조사를 거친다. 납본, 구입, 교환의 방법에 의해 수집한다.
행정간행물 납본	행정간행물을 발간시 발간일 1월이내에 간행물 6부를 자료과에 납본해야 한다. 자료과는 납본일로부터 2월이내에 간행물 6부 중 3부를 중앙자료관리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자료실 설치 의 무 조 항	행정기관은 자료실을 설치·운영해야한다. 다만 4급 이하 공무원이 장으로 되 있거나 소장자료가 적어 자료실 설치가 적합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자료 열람 제한	자료관리기관의 장은 자료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행정자료는 공문서와 자료로 구분되며 그 작성과 보존, 이용체계가 이 두종의 자

료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장장소에 따라 자료를 다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행정자료의 소장장소

문서과 (행정기관내)	모든 문서는 1년간 이곳에 보존된다. 보존기간이 3~10년인 문서, 보존기간이 영구, 준영구인 문서가 5년간 이곳에 보존된다.
자료과 (행정기관내)	(행정기관의 자료 관리기관) 행정기관이 간행한 행정간행물 3부.
지역대표관	행정기관이 간행한 행정간행물 2부
정부기록보존소	(공문서 보존기관 및 중앙자료 관리기관) 보존기간이 영구, 준영구인 문서로 5년간 문서과에 보존되었던 것. 대통령의 결재를 받은 문서로 총무처장관이 이곳에 보관할 것을 정한 문서. 행정기관의 행정간행물 3부.

이상과 같이 행정기관 내의 각 과에서 작성하거나 발행한 모든 문서와 대부분의 자료가 행정기관 내의 문서과와 자료과로 분리되어 보존, 이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지역대표관인 도서관은 행정기관이 발행한 자료 중 행정간행물을 의무적으로 제공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정부기록보존소에는 준영구 또는 영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서와 행정간행물이 보존, 이용된다.

3.2.2 정부기록보존소

우리나라의 국가기록물 보존제도는 정부기록보존

소가 1969년 총무처에 설치된 후 1974년 정부기록보존소 직제의 개정과 1984년 부산지소의 설립을 보면서 정부기록보존에 관한 업무는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하겠다. 정부기록보존소에서는 정부의 기록물을 수집하고 보존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열람시키고 또한 선정된 기록물의 마이크로 필름화, 외국의 기록보존기관과의 국제협력, 정부행정자료실 운영, 공무원외여행 정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본 소에서 보존관리되고 있는 기록물은 문서, 도면, 카드 등을 합쳐 300만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마이크로 필름 형태도 10여만건(roll)을 넘고

있다.³⁷⁾

우리나라 정부기록보존소의 소장기록물은 자료의 내용에 따라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도서관과는 달리 정부기록보존소는 공개적인 것과 비공개적인 것, 간행된 것과 간행되지 않은 것 모두를 갖춘 정부의 기록정보원을 모집, 보존하는 기관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기록보존제도에 있어 커다란 문제점으로는 첫째, 기록물의 수집문제로 현재 수집의 대상기관을 보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44개의 행정기관에 국한되어 있어 입법부, 사법부는 물론 법인과 정부출연기관, 민간단체 등의 다수기관이 수집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서울과 부산에만 정부기록보존소가 있어 전국적인 기록보존체계의 미확립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에 기록보존소가 없어 3년만 지나면 대부분의 기록이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³⁸⁾

정부기록보존소는 보존의 가치가 있는 공문서를 중심으로 보존, 이용한다는 고유한 기능에 따라 이곳에 소장되게 되는 자료의 최신성이 떨어진다는 측면과 위에서 살펴본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 정부기록보존소가 정보공개와 장이 되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며,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마다 기록보존소를 두도록 하는 강제규정이 신설되어 빠른 시일안에 기록보존소의 지방자치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현재는 그 실현이 요원하다고 하겠다.

3.2.3 행정자료실

정부는 1976년 개정공포된 '보고통제규정'에 의해 정부 각 부처에 행정자료실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1978년 대통령령제자로 행정전산화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행정자료실 운영 강화지침이 시달되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 형식적으로나마 행정자료실이

설치되기 시작했다.³⁹⁾

현 관련 규정에서 그 설치운영이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 행정자료실의 설치현황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자료실로 한정해 그 관련 법제를 살펴본다.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는 행정자료실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각 시·도의 행정자료실 운영규정을 설치목적, 비치자료(정보공개대상), 실장(소속), 열람청구권자(공개청구권자), 비공개자료, 자료의 수집, 자료목록의 작성과 배부, 자료의 폐기 등의 사항을 중심으로 비교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자료실은 의무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는 행정자료는 물론 중앙정부, 외부기관의 간행물까지 망라적으로 수집하며, 수집된 자료의 목록을 작성, 비치하여 필요에 따라 이를 배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공공도서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공공도서관에 납본하도록 한 규정이다. 그러나 정보공개제도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 규정에 의한 행정자료실은 대체로 행정의 능률화 및 간소화를 주목적으로 하여 열람청구권자도 대체로 소속공무원에 한정하고 있고 또한 일반인의 열람 및 접근은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기관의 행정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상황은 특별시·직할시·도 수준에 설치되고, 시·군·자치구 단위에는 아직 미설치이거나 준비단계에 있는 실정이다.⁴⁰⁾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 행정자료실은 행정기관 내의 각 과에서 작성하거나 발행한 모든 문서와 대부분의 자료를 보존,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지역의 지역대표관인 도서관은 행정기관이 발행한 자료 중 행정간행물을 의무적으로 제공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정부기록보존소에서는 준영구 또는 영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서와 행정간행물을 보

37) 김태승, "국립기록보존소법의 필요성과 제정방향," 기록보존 제4호 (1991) : 9

38) 김정호, "기록보관소도 갖추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 26 (1991.11) : 134~135.

39) 이선미, "행정자료의 효율적 관리-국방행정자료관리체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1982), p.10.

4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64.

존, 이용시키고 있다.

현재 정부기록보존소는 서울과 부산 두 곳에만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고, 행정기관의 행정자료실은 특별시·직할시·도 수준에 설치되어 있고 시·군·자치구 단위에는 아직 미설치이거나 준비중인 실정이다. 이에 반해 공공도서관은 공립도서관만 보더라도 전국적으로 223곳에 설치되어 있어⁴¹⁾ 시민의 생활에 밀착된 서비스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이 간행물에 한해 당해 지역의 지방행정정보의 청구와 공개의 장으로서 적합하다고 하겠다.

공공도서관에서 수집이 곤란한 행정기관에서 작성 또는 직무상 취득한 최신의 공문서류와 같은 자료는 행정자료실 운영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행정기관이 작성한 목록을 공공도서관에서도 수집, 비치함으로써 시민은 우선 해당지역의 도서관에서 알고자 하는 정보의 소재와 개략적인 사항을 알고, 다음에 사서에게 상담한 다음 공문서의 개시창구로 향할 수 있게 하므로써 도서관이 정보제공기관인 동시에 정보공개에 종합안내창구로서 역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도서관은 정부기록보존소의 지방화체계가 완비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하는 공문서 중 대외비가 아닌 공개적인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에서 기탁 보관하고 이를 시민에게 제공·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에 행정기관의 간행물을 납본 혹은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제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완비될 필요가 있고 적어도 공공도서관은 행정기관의 간행물만은 충실히 수집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정보공개제도 실시에 따른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제언—결론을 대신하여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 누구에게나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의 정보센터로서, 해당지방의

행정정보의 망라적 수집과 제공활동을 행함으로써 정보공개체제안에서 일익을 담당하는 기관이라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자료실과 기록보존소의 설치와 활동이 미비한 실정에서 공공도서관은 정보공개에의 장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30년만에 지방자치체가 부활된 현 시점에서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의 제정을 시작으로 하여 이와 같은 조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됨은 물론 더 나아가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인 정보공개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공공도서관이 지방행정자료의 수집과 제공활동을 통해 광범위한 정보공개체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더 나아가 행정기관의 간행물에 한해 그 개시청구와 공개의 장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재 행정자료의 공공도서관에의 납본이나 제공에 관한 규정인 도서관설치조례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제정하는 등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것과 현재는 미비한 상태인 지역자료실의 설치가 요망된다.

셋째, 정보공개에 대상기관으로서 공공도서관은 보다 개방된 운영과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적어도 도서관설치조례에 도서관 이용자의 사생활권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과 도서관 운영위원회 등 도서관 운영에 대한 시민참여의 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공공도서관은 해당지역의 행정자료실과 기록보존소 등과의 협력을 통해 행정자료의 수집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수집이 곤란한 행정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한 공문서 등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 관해서는 그 목록을 해당 도서관에 비치하여 공공도서관이 정보공개를 위한 종합안내창구로 기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1) 전국사서협회, 도서관자료집-(1)공공도서관편 (서울:신학문사, 1991), p.16.

〈참 고 문 헌〉

- “공익 침해없는 국가정보공개 판정 의미.” 한겨레신문 1989년 9월 6일자.
- 구병삭. “국정과 정보공개.” 월간조선 (1981년 8월호) : 68~81.
- “국민 옥철 공동 공안전산망 구축.” 한겨레신문 1991년 4월 9일자.
- “국민생활 권력앞에 완전 노출.” 한겨레신문 1991년 2월 5일자.
- 김정호. “기록보관소도 갖추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 26 (1990.11) : 134~135
- 김철수. “정보공개는 왜 필요한가.” 월간조선 (1981년 8월호) : 56~66.
- 김태승. “국립기록보존소법의 필요성과 제정방향.” 기록보존 제4호 (1991) : 9~21.
- 방현석. “정보공개가 행정개혁의 열쇠.” 월간조선 (1988년 5월호) : 442~453.
- 양재찬. “공문서 보존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4.
- 엄남이. “정보공개제도 실시에 따른 공공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2.
- 윤병태. “기록보존의 발전방향.” 기록보존 창간호 (1987) : 54~67.
- “2단계 기간전산망 확정.” 한겨레신문 1992년 2월 27일자.
- 이선미. “행정자료의 효율적 관리—국방행정자료 관리체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1982.
- 이윤식. “한국에 있어서 정보공개 제도화의 방향(1).” 행정과 전산 제13권 3호 (1991.10) : 6~17.
- 이택준. “지방행정자료의 수집 및 정리.” 도서관 제26권 12호 (1971.12) : 33~38.
- “이해당사자가 ‘공익보호 범위내’요구할 땐 국가기관 소유정보 공개해야.” 한겨레신문 1989년 9월 5일자.
- 전국사서협회. 도서관자료집 (1)—공공도서관편. 서울 : 신학문사, 1991.
- “‘정보공개’입법 1년 넘게 표류.” 한겨레신문 1990년 6월 30일자.
- “정보공개조례안 제정—전북도의회,” 한겨레신문 1992년 7월 2일자.
- 정보문화협의회. “정보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향.” 정보문화협의회 정책자료 98~101, 1989.
- 정현태. “공공도서관의 향토자료개발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1.
- “주민 ‘알권리’싸고 시—시의회 대립.” 한겨레신문 1992년 1월 10일자.
-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알권리」 보장.” 세계일보 1991년 11월 27일자.
- 주복원. “행정정보공개제도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9.
- 지병문. 한국지방자치의 이해. 서울 : 도서출판 풀빛, 1991.
- “청주시 정보공개.” 한겨레신문 1991년 11월 26일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서울 : 동연구원, 1991.
- “행정정보 공개조례 발의 박종구 청주시의원.” 한겨레신문 1991년 12월 18일자.
- “행정정보공개조례 확정.” 한겨레신문 1991년 12월 28일자.
- “행정정보 공개해야—대법원 판결, 지역주민 알 권리 보장 마땅,” 한겨레신문 1992년 6월 24일자.
- 廣瀬誠. “地方行政資料の収集と管理.” 圖書館雜誌 第60卷 1號 (1966.11) : 27~32.
- 吉原弘治. “自治體の情報公開制度化へ現状と課題.” ジュリスト 臨時増刊號 (1981.6) : 110~117.
- 沓掛伊左吉. “地方行政資料の正義と範圍.” 圖書館雜誌 第60卷 1號 (1966.1) : 27~30.

- 大串夏身. 圖書館政策の現状と課題—國・自治體の行政計劃を中心とした. 東京: 青弓社, 1985.
- 圖書館問題研究會編. 圖書館用語辭典. 東京: 角川書店, 1982.
- 砂川雄一, “行政に對する資料・情報サービス.” 圖書館界 第34卷 1號 (1982.5): 115~120.
- 石塚榮二. “情報公開と圖書館—圖書館の自由に關する宣言との關係—.” ジュリスト 臨時増刊 742號 (1981.6): 85~87.
- 石塚榮二. “圖書館と情報公開.” 圖書館界 第42卷 4號 (1991.1): 271.
- 水口政次. “文書館における文書資料の取扱いについて.” 日本圖書館協會 編. 情報公開制度と圖書館の自由. 東京: 同協會, 1987, pp.170~177.
- 阿部泰隆. “情報公開の體系とその總合的 整備.” ジュリスト 854號 (1986.2): 43~40.
- 日本圖書館協會. 情報公開制度と圖書館の自由. (圖書館の自由 第8集) 東京: 同協會, 1987.
- ‘情報公開と圖書館’検討グループ. “情報公開と圖書館.” 日本圖書館協會 編. 情報公開制度と圖書館の自由. 東京: 同協會, 1987, pp.11~30.
- 總務廳行政管理局. 情報公開制度化への課題. 東京: 第一法規, 1990.
- Josey, E.J. and Jones, Clara Stanton, *The Information Society: Issues and Answers.* London: Oryx Press, 1978.
- Smith, Thelma E., “Municipal Reference Libraries” In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18, edited by Allen Kent., et al. New York: Marcel Dekker, Inc., 1976, pp.299~301.